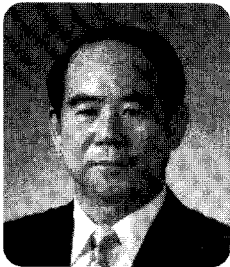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특허제도(1)

I. 서 언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중에서도 성장 잠재력 및 잠재적 시장규모가 큰 자원 및 인구 부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교역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권 보호 문제는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성 및 국제성이 강한 특허법의 성격상 인도네시아 특허법의 기본 골격 역시 우리 특허법을 비롯한 선진 제국의 특허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속지주의 원칙 및 개발도상국이라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규정 및 제도에 있어서, 우리 특허법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서 만 규
〈변리사〉

목 차

- I. 서 언
- II. 성문특허법의 제정
- III. 특허대상 발명
- IV. 특허출원절차
- V. 심사절차
- VI. 특허권
- VII. 실시권
- VIII. 특허권의 등록말소
- IX. 실용신안
- X. 결 어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II. 성문 특허법의 제정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1961년 10월 1일에 독립한 이후, 20여년 동안 특허, 실용, 의장, 저작권에 관한 보호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만이 유일한 성문법이었으며, 1982년에 이르러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11월 1일자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16장, 134개 조문으로 구성된 성문 특허법(Undang-undang Patent

No. 6 Tahun 1989)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특허에 관한 어떠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1953년도의 정부 고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입법을 예견한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만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가출원중, 1981년 8월 1일부터 1989년 11월 1일 사이의 출원은 1991년 8월 1일부터 1992년 7월 31일 사이에 새로이 제정된 특허법하에 재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1989년 제정 성문 특허법은 독특한 공표(Publication of Announcement) 제도(§ 47~§ 49) 및 공표 기간중의 이의신청 제도(§ 50, §51)와, 선원주의(§12, §37, §38), 1발명 1출원주의(§24, 시행령 34 §27), 다항제(시행령 34 §4), 우선권 제도(§29, §31), 출원심사청구(§55, §56)에 의한 심사주의(§60~64), 보정 제도(§39, §40), 분할 출원(시행령 34 §7~§10) 및 변경 출원 제도(시행령 34 §11~§14),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42~§44),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 제도(§68~§72), 실시권 제도(§76~§80), 특허권 취소 제도(§94~§103)등을 규정하여 그 기본 골격은 정비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미비점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법상의 국내우선권 제도, 선원지위의 확대 규정, 우선심사 제도, 조기 공개 제도, 출원공고 제도, 보정각하 제도,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 이외의 심판 제도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의 체약국이 아니므로 PCT 경로

에 의한 출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실시 및 특허 침해의 예외 규정(§20~§22)과, 불실시에 따른 강제 실시권 제도(§81~§93) 및 특허권 취소 규정(§94)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Ⅲ. 특허대상 발명

1. 발명의 정의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활동(activity)을 의미하며, 방법 또는 물, 또는 방법이나 물에 대한 개선(improvement) 또는 발전(development)”이라 정의(§1(2))되어 있으나, 우리법상의 발명 개념과 동질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발명의 특허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신규성(§3), 진보성(§2)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5)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신규성 판단시 간행물 공지의 경우는 세계주의(§5(1))를, 공지·공용 의 경우는 국내주의(§5(2))를 취하는 점은 우리법과 동일하다. 또한,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월내 출원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신규성 의제 규정(§4)이 있으나, 그 사유로서는 공인된 국내외 박람회에서의 출품 및 발명자에 의한 연구 개발 목적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실시만을 들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특허 발명으로서, 공서양속 또는 법

령에 반하는 발명, 인간 또는 동물의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관한 발명, 신종 또는 변종 동식물 및 그 생산방법에 관한 발명,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 순수과학 및 수학 분야의 이론 및 방법을 규정(§7)하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 관련 발명은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시행령 34 §18),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체결국은 아니나 조약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 기탁 기관에의 출원전 기탁은 인도네시아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다만, 출원일로 부터 3월내에 수탁증 제출을 요건으로 함)된다(시행령 34 §19).

IV. 특허출원절차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절차는 표1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선원주의(§12(1), §38)를 채택하고 있고,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영어 철자를 이용한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수행된다.

1. 출원시 구비 서류

출원시에는 명세서 및 도면과, 위임장 및 필요한 경우 양도증(각각 공증 불필요), 우선권 서류 및 번역문(우선권 주장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팩스 사본의 제출도 가능하나 출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양도증 및 우선권 서류(영문 번역문 첨부)는 출원일로부터 2월내(통상 1회에 한하여 1월 기간 연장 가능)에 제출하여야 한다(우선권 서류의 경우 §29에는 출원일로부터 6

월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허국의 처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시행령 34 §3(4)에 의해 진정한 권리자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행규칙 M.06-HC.02.10 §2(2)에 의해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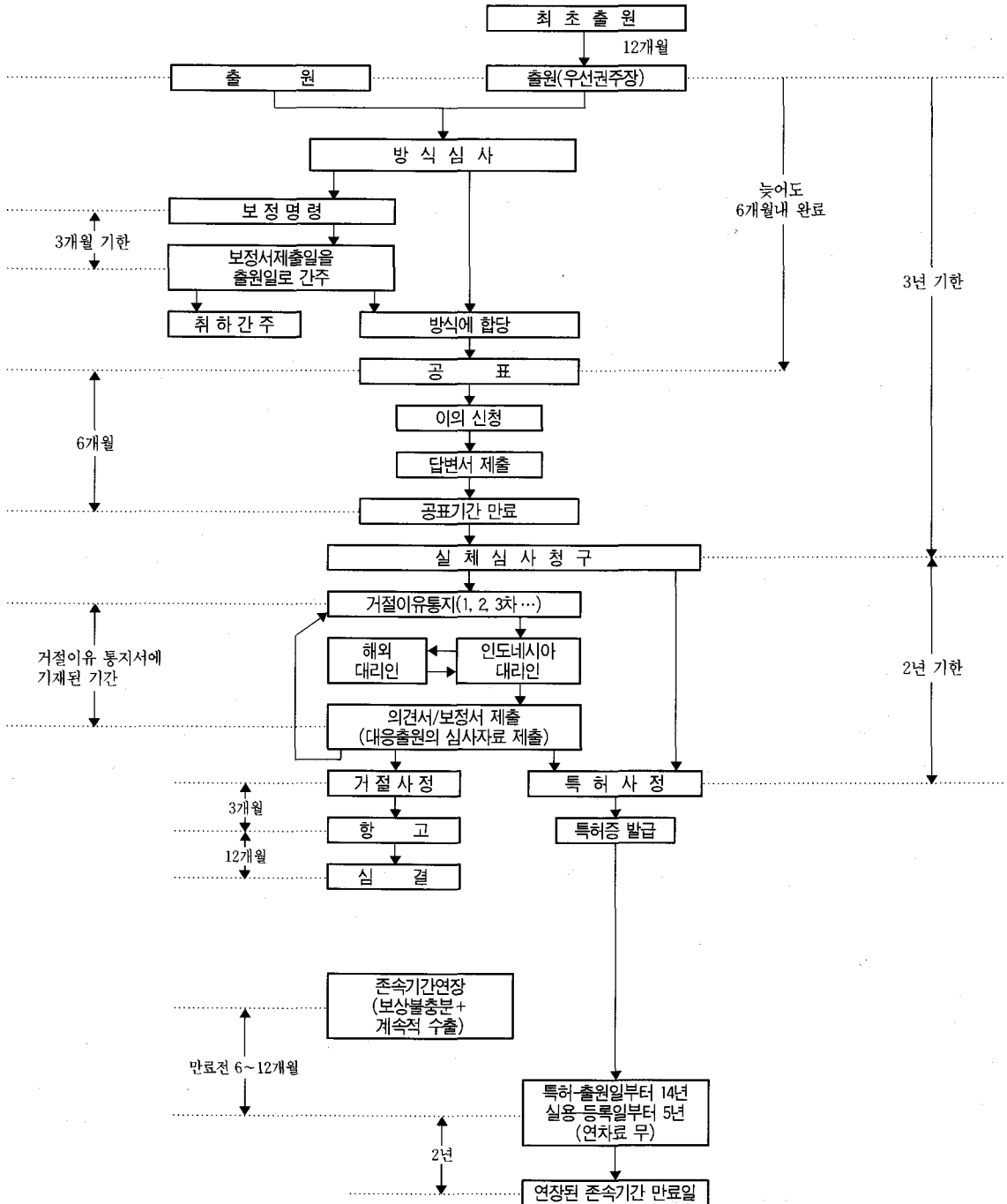
2. 우선권 제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1979. 5. 10. 파리협약(스톡홀름 개정안)을 비준하였으나 우선권 인정을 규정한 파리협약 §4를 포함한 §1~12의 실제적 규정을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 협약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1983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파리 협약상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특허법에 명문화하고 있다(§29, §31).

3. 다항제 및 일발명 일출원주의

특허 출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시행령 34 §4)하여 다항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1특허 출원은 1 발명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24)하여 1발명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예외로서 (i) 물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그리고 그 물의 사용 방법(utilization)에 관한 1독립항, (ii) 방법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또는 기구에 관한 1독립항, 또는 (iii) 물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그리고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또는 기구에 관한 1독립항을 1특허 출원이 가능한 일군의 발명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절차



으로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34 §27).

4. 실제적 보정

적법한 보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최초 출원 명세서의 범위내이며(§ 39(1)), 적법한 보정은 소급효를 가진다(§39(2)). 보정은 심사진행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참고로, 출원공고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법과 같이 이를 기준으로 한 보정상의 구별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5. 출원의 분할과 변경

1출원이 다수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별도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출원은 출원일이 소급되고(시행령 34 §7), 파리 협약 §4G1의 규정과 같이 대상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우선권

의 이익을 향유한 채로 분할 가능하다(시행령 34 §9(1)).

이러한 분할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국에 분할 청구서를 제출하고(시행령 34 §8(1)), 특허국으로부터의 승인일로 부터 3월내에 분할하여야 하며(시행령 34 §8(3)), 심사 종료후의 분할 청구는 각하된다(시행령 34 §8(2)). 또한, 특허국의 권고적 지시(Advise)에 의한 분할출원도 가능하다(시행령 34 §10(1)).

한편, 특허와 실용신안(Simple Patent) 상호간의 출원 형식의 변경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승인하에 변경출원하여야 한다(시행령 34 § 11, §13). 실용신안으로부터 특허로의 변경출원은 사정 처분전에 하여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표전에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M.06-HC.02.10 §11(2), (3)). <계속> **발특9702**

가입을 환영합니다

97년 1월 중 본회가입 업체

업체명	대표자	가입년·월·일	대표
신한합동특허법률사무소	조치훈	97. 1. 29	
주소		전화번호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0-38 (원곡B/D 402호)		(02)552-9265/6	